

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

1.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1
2.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2
3. 충무훈련 10일전 병력동원훈련소집 사전 알림톡 안내 4
4.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... 6
5.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8
6. 병역지정업체(기업부설연구소) 선정요건 완화 10
7.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12

※ 신·구 대비표

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,
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!
-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-
병무청 현역기획과 (☎ 042-481-2739)

병역연기, # 병역이행, # 예측 가능성

<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>

- ☐ 추진배경 : 현행 규정상 '시험일정'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병역이행 예측 가능성 제고
- ☐ 주요내용
 -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기준이 되는 '시험일정'을 '시험일자'로 명확화
- ☐ 기대효과 : 입영일자 연기 처리기준 명확화 및 병역의무자의 연기가능 여부 예측 가능성 제고
- ☐ 시행일 : 2026년 7월 중

Q.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?

- 시험응시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

Q.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제도 시행 전	제도 시행 후
내 용	'시험일정'으로 규정	'시험일자'로 명확화

Q. 공무원 시험처럼 필기시험·면접시험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단계별로 시행되는 시험은 해당 단계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 시험일까지 연기처리

Q.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- 병무청 현역기획과: 042-481-2739
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: 1588-9090

본인이 선택한 현역병 입영일자가 보장되어, 계획에 따라
안정적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.

-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-
- 병무청 현역입영과 (☎ 042-481-2716)

입영, # 입영일자 본인선택, # 상근예비역

<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>

- ☐ 추진배경
 -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본인의지와 무관하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불합리 해소
 -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반복되는 신청과 취소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실입영 희망자의 입영일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
- ☐ 주요내용
 -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는 →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
 -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횟수 입영일 30일전까지 3회 → 1회
- ☐ 기대효과 : 병역의무자 선택사항 보장으로 행정신뢰 제고
- ☐ 시 행 일 : 2026년 7월

Q.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제도 시행 전	제도 시행 후
상근예비역 선발대상	현역병 입영대상자(다음연도 본인 선택자 포함) 중 선발	현역병 입영대상자(다음연도 본인 선택자 제외) 중 선발
신청 취소 횟수	입영일자 30일전까지 3회로 제한	입영일자 30일전까지 1회로 제한

Q.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?

- 본인선택 취소횟수가 1회이므로 선택과 취소에 따른 과열경쟁이 완화되어 실제 입영희망자의 입영일자 선택권 존중
- 병역의무자의 복학, 사회진출 등 미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상근예비역 직권선발에서 제외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병역 이행 환경 조성

Q.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- 병무청 현역입영과: 042-481-2716
- 병무청 상담센터: 1588-9090

☞ (참고) 병무청 누리집>공지사항>“다음연도(2027년)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(2026.3.31.)”

Q. 상근예비역은 무엇인가요?

- 상근예비역은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방위 인력충원을 위해 도입,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수료 후 지역예비군부대 등에서 출·퇴근 복무하며 업무를 수행

Q. 현역병 본인선택자를 언제부터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나요?

- 2026년 7월에 접수예정인 다음연도(2027년) 본인선택자부터 적용되어, 2027년에 복무할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

Q. 현역병 본인선택자의 취소횟수 1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- 2026년 7월에 접수예정인 다음연도(2027년) 본인선택자부터 적용

**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사전안내로
예비군 훈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**

- 충무훈련 10일 전 병력동원훈련소집 사전 알림톡 안내 -
병무청 동원관리과 (☎ 042-481-2790)

예비군, # 훈련, # 알림톡

< 충무훈련 10일 전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알림 >

- ☐ **추진배경** : 매년 지역별 충무훈련 시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시 대비 예고없이 실시되는 훈련소집 참가 부담경감 필요
* 지자체에서도 충무훈련 홍보 실시 중
- ☐ **주요내용**
 - (기존) 충무훈련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에게 예고없이 소집일을 정하고, 소집 4일 전 통지서 교부 후 불시소집점검 실시
 - (개선) 해당 대상자에게 충무훈련 시작 10일 전, 비상소집 가능성 및 전시임무 관련 알림톡 발송 * 소집통지서 교부 및 불시소집점검 절차는 동일
- ☐ **기대효과** : “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가능성”을 사전 안내하여 훈련에 대한 관심 및 훈련참가 준비도 제고
- ☐ **시행일** : 2026년 10월(대전지역 시범운영, 4월)

Q.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- 병무청 동원관리과 : 042-481-2790
병무민원상담소 : 1588-9090

Q. 혜택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☐ **(수혜자) 예비군 및 예비군의 직장(회사, 가게) 고용주**
- ☐ **(주요내용)**
 - 충무훈련 기간 중 하루,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림톡 발송 사전 안내
 - 회사 업무 일정조율, 대체인력 사전 확보 등 스케줄 조정을 통한 훈련 참가 준비 지원

Q.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제도 시행 전	제도 시행 후
불시소집훈련 가능성·전시임무 인지	소집일 4일 전	소집일 10일 전
주요업무 일정조율 등 조치	X(곤란)	O(가능)

해외이주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그 나라에 살지 않으면
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-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-
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(☎ 042-481-2954)

병역, # 국외여행허가, # 해외이주신고

<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>

- ☐ 추진배경 :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 발생 우려
- ☐ 주요내용
 - (현행)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해외이주신고 사실로 허가
 - (개선)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신고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후 허가
- ☐ 기대효과 :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허가로 제도 악용 방지
- ☐ 시행일 : 2026년 7월 예정

Q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- 2026년 7월 시행 예정

Q.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?

-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강화

Q.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-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: 042-481-2757
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: 1588-9090

Q. 누가 적용대상 인가요?

- ☐ 해외이주법에 따라 무연고이주, 현지이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

- 해외이주신고 이주종류는 연고이주, 무연고이주, 현지이주로 구분

Q.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
구분	제도 시행 전	제도 시행 후
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	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	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. 다만, 연고이주 외에는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

Q.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무연고이주, 현지이주 신고자는 거주국 출입국 내역, 재학·재직 증명서 등 거주사실 증명서류 제출 시 국외여행허가 가능
- 연고이주는 기존대로 해외이주신고 사실 확인으로 국외여행허가 가능

사회복무요원에게 임신검진 동행휴가(최대 10일)를
신설해 저출생 극복과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.

-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-
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(☎ 042-481-3010)

사회복무요원, # 청원휴가, # 임신검진동행

<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>

- ☐ 추진배경 : 국가공무원 및 군인의 휴가 개정사항(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, '25.7.22.)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도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필요성 제기
- ☐ 주요내용
 - 사회복무요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
- ☐ 기대효과 : 저출생 극복과 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
- ☐ 시 행 일 : 2026년 8월 예정(「병역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 중)

Q.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
- 2026년 8월 중(「병역법 시행령」 개정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통해 안내)

Q.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
구분	제도 시행 전	제도 시행 후
배우자 임신검진 동행	연가 사용	청원휴가 사용

Q.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?

- 저출생 대응 및 일·가정 양립: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부담 완화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

Q.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-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: 042-481-3041
-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: 1588-9090

Q.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☐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

Q.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- ☐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가능

Q.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최초 신청시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,
- 임신검진 동행 후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

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을 완화합니다.

- 병역지정업체(기업부설연구소) 선정 요건 완화 -
병무청 산업지원과 (☎ 042-481-2772)

병역지정업체, # 선정, # 완화

< 병역지정업체(기업부설연구소) 선정 요건 완화 >

- ☐ **추진배경** :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(과기부)이 완화*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요건과 괴리,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이중비용 발생 우려
*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26.2.1.시행)
- ☐ **주요내용**
 -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물리적 요건 완화
* (기존) 고정 벽체로 된 독립공간 → (개선)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 포함
- ☐ **기대효과** :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기준 혼동 예방 및 공간적 부담 완화
- ☐ **시행일** : 2026년 7월 1일

Q.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
- 2026년 6월 중(세부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 공고 예정)

Q.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?

-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공간 배치 조정이 불필요
-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하게 물리적 요건을 완화하여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기준 혼동 예방

Q.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- 병무청 산업지원과: 042-481-2818

Q.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

Q.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- ☐ 완화된 기준으로 병역지정업체(기업부설연구기관) 선정 신청 가능

Q.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
구분	제도 시행 전	제도 시행 후
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	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	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된 공간

Q.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
- 1단계. 대상확인: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여부를 확인
- 2단계. 신청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가능

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 시, 병역의무를
대체복무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
-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-
병무청 병역공개과 (☎ 042-481-2774)

대체복무, # 소집기피, # 병역이행기회 제공

<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>

- ☐ 추진배경 :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
이후 현역병 입영의무 등이 부과되나 종교적 신념 등으로
현역병 입영을 거부 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 발생
- ☐ 주요내용
 - (개정사항)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
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에서 제외(대체역법 제25조 개정)
- ☐ 기대효과 :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개인 신념에
따른 병역의무 이행기회를 제공하여 반복적 형사처벌 방지
- ☐ 시행일 : 2026년 4월 21일

Q.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나요?

- 대체역 소집기피자에 대한 반복적 형사처벌에 따른 논란 방지
- 개인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재부여
하여 양심과 조화된 병역이행의 효과성 제고

Q.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- 병무청 병역공개과: 042-481-2774

Q.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?

- ☐ 대체역 편입자 중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
소집기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

Q.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
- 종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,
대체역 신분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 등 의무가 부과되었으나,
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체역 신분이 유지되어 대체복무
요원으로 병역이행이 가능

「신·구 대비표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시험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	☐ '시험일정'으로 규정	☐ '시험일자'로 명확화	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 (‘26.7월~) 병무청 현역 기획과 (042-481- 2739)
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	☐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다음해 입영하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되어 선발순위에 해당시 직권선발	☐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다음해 입영하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	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 (‘26.7.1.)
	☐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3회 허용	☐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1회 허용	병무청 현역입영과 (042-481- 2716)
총무훈련 10일 전 병력 동원훈련소집 사전 알림톡 안내	☐ 총무훈련 대상 지역에 거주 하는 동원미지정 예비군 에게 예고없이 소집일을 정하고, 소집 4일전 통지서 교부 후 불시소집점검 실시	☐ 해당 대상자에게 총무훈련 시작 10일 전, 병력동원 훈련소집 가능성 및 전시 임무 관련 알림톡 발송 → 불시소집가능성 및 전시 임무 인지로 주요업무 일정조율 등 조치 가능	26년 대전지역 총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력 동원훈련소집 등 실시계획 보고(시범실시) (‘26.4.17.) 병무청 동원관리과 (042-481- 2790)
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 행허가 시 실제 국외 거주여부 확인	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가능	☐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 이주신고 이주대상국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국외 여행허가 가능	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 처리 규정 (‘26.7월 예정) 병무청 국외 자원관리과 (042-481- 2954)

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 설	☐ <신 설>	☐ 사회복무요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 휴가 사용 가능	병역법시행령 (‘26.8월 예정) 병무청 사회 복무관리과 (042-481- 3010)
병역지정업체(기업부설 연구소) 선정 요건 완화	☐ 물적요건 :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	☐ 물적요건 :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 로 된 공간	전문연구요 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 (‘26.8월 예정)
			병무청 산업지원과 (042-481- 2772)
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	☐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시 대체역 편입 취소 후 현역병 등 입영 의무 부과	☐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대체복무 신분을 유지하여 대체복무 요원으로 병역의무 이행 가능	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(‘26.4.21.)
			병무청 병역공개과 (042-481- 2774)